

#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12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5년 10월 30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11월 5일

## 2. 제안이유

- 일 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직장맘에 대한 근거리 상담지원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1개 권역을 추가 설치하고자,
-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와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노하우 및 경험을 축적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위탁기간 : 2년 (2016. 3. ~ 2018. 2.)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400백만원

#### 나. 주요 위탁사무

-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직장맘 법률 상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법률자문 리서치, 법률교육, 제도개선 추진 등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
- 초기 정착기간 간소화를 위해 관련분야 법인 또는 기관(단체)위탁 운영이 직장맘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12조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반영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등이며,
  
- 위탁기간은 2년(2016. 3. ~ 2018. 2.)임.

### 나.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확대 계획

- 직장맘지원센터는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해소하고, 직장맘의 권리를 보호하며, 일·가족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년 3월에 최초로 설치(현재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내 건물내 1층에 위치함)된 서울시립 시설임. 이후 지난 3년간 종합상담 건수 총 6,422회, 분쟁해결 건수 총 53회 등 일하는 여성의 종합지원 사업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촉진에 기여하고 여성의 모성권, 노동권 향상 등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음 (※별첨 참고자료. 現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현황).

○ 이런 가운데, 직장맘들의 상담 및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sup>2)</sup>함으로써, 이에 서울시는 이의 사업을 확대하여 근거리 상담 및 원활한 밀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2019년 까지 현재 1개소에서 권역별로 1개씩 총 4개소로 확대하려는 계획<sup>3)</sup>이며, 금번(2016년)에 서남권(금천)에 설치·운영하면서, 이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 동 동의안을 통해 민간위탁으로의 추진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확보될 경우, 향후 2016년 1월에 수탁기관을 공모(예정)한 후,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할 적격자를 선정하여, 2016년 3월부터 동 센터의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2016년 7월에 개관 할 예정임.

- 2) - 상담건수 : 474건('12년) ⇒ 1,782건('13년) ⇒ 2,279건('14년)  
 - 노동법률교육 신청건수 : 81건 ('13년) ⇒ 170건 ('14년)

- 3) ○ 2019년까지 3개소 추가 (現 1개소 ➔ 2019년 4개소)  
 【 연차별 · 권역별 확대(안) 】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現 직장맘지원센터 (동남권)	■	■	■	■	■	■	■	■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서남권)					■	■	■	■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서북권)						■	■	■
노원직장맘지원센터 (동북권)							■	■



##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직장여성이 겪는 고충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시의 사무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설치 및 기능)<sup>4)</sup>에 따라 직장맘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

---

4) 제10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9조 제3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sup>5)</sup> 및 제6조 제9호<sup>6)</sup>에 따라 해당사무를 위탁하려는 근거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및 전문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는데,
  - 금천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맘의 권리보호, 일·가족 양립 등을 지원·운영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인 노무사의 노동권 상담 등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모성보호 및 노동문제에 대한

5)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2014.5.14.>

6)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전문지식과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 이의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  
하게 한다면, 보다 그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現) 직장맘지원센터 현황

### □ 시설개요

- 위 치 :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면적122m<sup>2</sup>)
- 운영주체 :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12. 3. 28 협약체결)
- 위탁형태 : 사무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2. 4. 1 ~ 2015.12.31.
- 사 업 비 : 406백만원 (인건비 238, 운영비 70, 사업비 98)
- 조 직 : 7명 (센터장 1, 기획총괄팀장 1, 종합상담팀장 1, 팀원 4)

### □ 주요사업

- 직장맘 3고충(직장·가족·개인)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서비스
-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및 현장상담
- 직장맘의 법적 권리 안내 및 사업주 제도 관련 안내 책자 제작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노무사 10, 변호사 10, 상담사 5) 운영
- 직장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워크숍 진행
-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 □ 추진실적

구분	지원 실적										
	종합상담				노동 법률 교육	커뮤니티 지원사업	홍 보				
	소계	직장내 고충	가족 관계의 고충	개인적 고충			홈페이지 (방문자수)	블로그 (방문자수)	언론 보도	행사참여 (참여자수)	뉴스레터 (수령자수)
합 계	6,422	5,357	658	407	354	3,751	109,909	461,609	748	33,870	26,500
'12년	474	368	84	22	76	322	1,849	1,835	154	1,300	-
'13년	1,782	1,438	259	85	81	1,174	25,572	92,264	133	7,200	5,085
'14년	2,279	1,869	208	202	170	1,140	40,092	220,358	321	8,400	10,520
'15. 9월	1,887	1,682	107	98	27	1,115	42,396	147,152	140	16,970	10,895

-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월4회) : 당산역, 가산디지털역 등 4개소
-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관련 행사 홍보부스 운영 : 18회
- 여성·노동 유관기관과 MOU 체결 및 협력 추진
-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100답』 배포 : 1,800부
- 종합상담사례집 발간 : 400부